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0가합7443 약정금
원 고 ** 주식회사
양산시 **동 **
대표이사 김OO
피 고 조OO (62****-1*****)
부산 **구 **동 **
변 론 종 결 2011. 4. 12.
판 결 선 고 2011. 4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3,319,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. 3. 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

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**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대하여 113,319,863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, 2009. 1. 12. 위 공사대금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45호로 출자지분권(증권)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, 2009. 1. 14.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(이하 '이 사건 가압류'라고 한다)을 받았다.

나. 한편, 원고는 2009. 3. 3. 피고로부터 "위 금원(113,319,863원)은 각서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인바 위 금원에 대해 원고가 경료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2009. 3. 6.까지 변제하겠음을 각서한다"는 내용의 이행각서(이하 '이 사건 이행각서'라고 한다)를 교부받았는데, 이 사건 이행각서 하단 각서인 란에는 '(주)** 대표 조OO'이라고 기재되어 있고, 그 이름 옆에 피고 개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.

다. 이 사건 가압류는 2009. 3. 4. 원고의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으로 해제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이행각

서를 작성한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,319,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(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),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고, 이와 같은 법리는 법인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인바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각서인 란에 '(주)** 대표 조OO'이라고 기재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한 점, 이 사건 이행각서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닌 피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회사법인인감을 날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따라서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외 회사에 미칠 뿐 피고 개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의호 _____

판사 김성식 _____

판사 연선주 _____